

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8. 27.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: 2020. 8. 14. / 성동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0. 8. 19.
- 다. 상정일자: 2020. 8. 26.
(제254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- 가. 제안설명: 기획재정국장
- 나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,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나.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신청 방법 및 자치단체가 선정대리인 선정 시 통지 및 기록·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9조)
- 다.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각종 우대사항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5. 1. ~ 5. 21.) 및 재입법예고(2020. 7. 21. ~ 7. 28.)
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.
- 검토 결과,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(2019. 12. 31. 개정, 2020. 3. 2. 시행)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시 비용 부담 없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도입 규정이 신설되었고,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- 이에,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표준안을 토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